

1. 개정 이유

「비상대비자원관리법」이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로 제명이 변경되어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」의 제명을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으로 변경하고, 근거가 되는 상위법률과 시행령의 명칭을 변경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」의 제명을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으로 변경
- 나. 근거 법령인 「비상대비자원관리법」을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로, 「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」을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으로 변경
- 다.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·권한 위임 인용법률인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을 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
- 라. 별표 사항의 근거법령인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을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으로,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을 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,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」”을 “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”을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”을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」”을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5호 “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전문업체”를 “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”으로 한다.

별표1, 별표2 중 “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”을 “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”으로, “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전문업체”를 “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

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5호서식, 별지 제6호서식, 별지 제8호서식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”을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/u> <u>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</u>	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/u> 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u>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 <u>비상대비자원 관리법</u> 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(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) 「 <u>비상대비자원 관리법</u> 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는 별표 1과 같다.	제2조(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) 「 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</u> 」(----- -----) ----- ----- -----.
제3조(자원조사) ① 법 제10조제1항 및 「 <u>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</u> 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충분하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실	제3조(자원조사) ① 법 제10조제1항 및 「 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 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~③ (생략)	-----. ②~③ (현행과 같음)
제4조(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~4. (생략) 5. 「<u>정보통신산업 진흥법</u>」 제33조 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	제4조(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~4. (현행과 같음) 5. 「<u>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
[별표1]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(제2조 관련) 1. (생략) 2. (생략) 가.~나. (생략) 다. 「<u>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</u>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라.~사. (생략) 아. 「<u>정보통신산업 진흥법</u>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자. (생략)	[별표1]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(제2조 관련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가.~나. (현행과 같음) 다. 「<u>소프트웨어 진흥법</u>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라.~사. (현행과 같음) 아. 「<u>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자. (현행과 같음)
[별표2]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 범위 및 기준(제4조제1항 관련) 1.~4. (생략)	[별표2]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 범위 및 기준(제4조제1항 관련) 1.~4. (현행과 같음)

5. 소프트웨어사업자 ○ 「<u>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</u>」 제 24조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써 기술인력이 2인 이상인 업체 6.~8. (생략) 9.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○ 「<u>정보통신산업 진흥법</u>」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로서 기술인력이 2인 이상인 업체 10. (생략)	5. 소프트웨어사업자 ○ 「<u>소프트웨어 진흥법</u>」 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써 기술인력이 2인 이상인 업체 6.~8. (현행과 같음) 9.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○ 「<u>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서 기술인력이 2인 이상인 업체 10. (현행과 같음)
[별지 제1호서식] 중점관리대상 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	[별지 제1호서식] (현행과 같음), 법령 명칭 변경 “비상대비자원 관리법” → “비상대비에 관한 법률”로 문구 수정
[별지 제2호서식] 중점관리대상 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	[별지 제2호서식] (현행과 같음), 법령 명칭 변경 “비상대비자원 관리법” → “비상대비에 관한 법률”로 문구 수정
[별지 제5호서식] 비축명령서	[별지 제5호서식] (현행과 같음), 법령 명칭 변경 “비상대비자원 관리법” → “비상대비에 관한 법률”로 문구 수정

[별지 제6호서식] 비축물자의 비축 장소 변경 신청서	[별지 제6호서식] (현행과 같음), 법 령 명칭 변경 “비상대비자원 관리법” → “비상대비 에 관한 법률”로 문구 수정
[별지 제8호서식] 비축물자 실태보 고서	[별지 제8호서식] (현행과 같음), 법 령 명칭 변경 “비상대비자원 관리법” → “비상대비 에 관한 법률”로 문구 수정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	
연 락 처	(044) 202 - 4383